#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의안 번호 1374

발의연월일: 2017년 6월 30일

제 출 자:정관훈 의원

### 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실시 및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라. 고독사 예방사업 체계적 추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(안 제6조)
- 마.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(안 제7조~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추후협의

다. 입법예고 : 대 상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,신체적, 정서적,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,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노인"이란『지방자치법』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- 2. "홀로 사는 노인"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.
- 3. "고독사" 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.
- 4. "고독사 위험자" 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.
- 5. "홀로 사는 노인 안전도우미" 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, 안부전화,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홀 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.

제4조(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)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·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2.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
- 3.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

- 5.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·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·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.

- 1.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- 2.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- 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심리상담 및 치료
- 2. 홀로 사는 노인 안전도우미 파견으로 말벗,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
- 3. 가스·화재·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
- 4.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
- 5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